교육훈련규정

제 정 2010. 3. 9 개 정 2016. 3.24 개 정 2017.10.26 개 정 2022. 5.12 개 정 2023. 6.14 [인사육성부 042-600-8163]

제1장 총 칙

-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 임직원(이하 "직원"이라 한다)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 (이념)** 공사의 교육훈련이념은 헌신적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, 고객문제해결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.
- 제3조 (적용범위) 공사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교육훈련"(이하 '교육'이라 한다)이라 함은 공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체의 학습행위를 말한다.
 - 2. "사내교육"이라 함은 직원의 자질 또는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사 내에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며, 전사교육, 단위부서교육, 연수교육으로 구분한다.
 - 3. "위탁교육"이라 함은 국내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, 대학(원), 연구기관 등에 직원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, 실무위탁교육, 연구과정, 학위과정으로 구분한다.
 - 4. "수탁교육 "이라 함은 공사가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와 방식에 의해 공사의 직원이 아닌 교육생을 위임받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 - 5. "교육주관부서"라 함은 공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목표와 방침을 수립하고, 각 세부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, 통제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6. "연수부서"라 함은 사내교육 중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7. "단위부서"라 함은 직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서를 말한다.
 - 8. "교육학점이수제"라 함은 해당직급 재직기간동안 이수해야 할 소정의 교육과정과 학점을 취득하게 함으로써,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체계적으로 도모하는 인력개발제도를 말한다. <2016.3.24>
 - 9. "필수과정"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의 교육과정 중 해당 직급 및 업무에 따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정을 말한다.
 - 10. 삭제<2016.3.24>

- 11. "선택과정"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의 교육과정 중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. <개정 2016.3.24.>
- 12. "전일제"라 함은 위탁교육대상자가 교육대상으로 발령을 받아 학업에만 전념하는 수학제도를 말하다. <신설 2023.6.14 >
- 13. "비전일제"라 함은 위탁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에 출석하는 근무병행 수학제도를 말한다. <신설 2023.6.14 >

제2장 교육훈련체계

제5조 (교육훈련체계) 공사의 교육훈련체계는 별표1과 같다. 다만, 교육주관부서장은 급격한 경영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경영방침 또는 경영목표 등에 적합한 교육훈련체계를 새로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24>

제6조 (교육분류) 공사 교육훈련은 교육목적 및 형태에 따라 사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분류하고, 사내교육과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세분한다.

1. 사내교육

- 가. 전사교육 : 교육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리더십역량, 사업역량, 혁신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주관부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<개정 2017.10.26>
- 나. 단위부서교육 : 단위부서장이 소속 부서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,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과 직원들의 변화관리와 공통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양교육으로 구분한다.
- 다. 연수교육 : 연수부서 주관하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
2. 위탁교육

- 가. 실무위탁교육 : 업무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나. 연구과정 : 실무위탁교육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고급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전일제 3개월 이상 또는 비전일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<개정 2023.6.14>
- 다. 학위과정 : 학위취득을 통한 학문적 직무지식 또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(원)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제7조 (인재육성위원회) 교육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육성위원회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의 기능, 구성,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지침에서 정한다.

제3장 교육훈련계획 및 시행

제8조 (계획의 수립) ① 교육주관부서장은 공사의 경영환경 및 중장기 인재육성계획 등을 반영하여 연도별 교육목표와 방침을 설정하고, 이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24>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교육이념
- 2. 교육체계
- 3. 분야별, 과정별 교육계획 및 예산
- 4. 기타 필요한 사항
- ③ 연수부서 또는 각 단위부서장은 교육주관부서장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9조 (계획의 시행) ① 교육주관부서장, 연수부서장, 단위부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계획에 대하여 과정별 또는 내용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3.24> ② 교육주관부서장은 공사의 전체 교육훈련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제10조 (교육대상자 선정) ① 교육대상자의 선정은 본인 및 소속 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 주관부서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문인력 양성 등 공사의 인력운영 계획과 교육 과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교육주관부서장이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.
 - ② 교육신청자가 교육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교육대상자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③ 제6조 규정의 위탁교육 중 국외실무위탁교육, 연구과정, 학위과정의 교육대상자 자격 및 선발기준 등의 세부기준은 교육훈련지침에서 정한다.
 -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단위부서의 현장중심 교육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단위부서교육과 국내 실무위탁교육의 대상자는 단위부서장이 선정할 수 있다.
- 제11조 (교육명령) ① 교육의 참석은 교육주관부서장 또는 단위부서장의 교육명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본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근태처리는 교육으로 하며, 교육기간 중의 처우와 보수 등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.
- 제12조 (피교육자 의무) ① 본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피교육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에서 정한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.
 - ②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충실히 노력하여야 하고, 과정별 학습요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정해진 교육기간 내 수료하여야 한다.
- 제13조 (교육취소) ① 교육주관부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제12조에 규정된 의무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하 거나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자의 교육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질병,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계속할 수 없을 경우
 - 2. 긴급한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계속할 수 없을 경우

- 3. 본 규정 및 교육훈련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대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- 4. 임의로 교육장소를 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중지 또는 포기 하였을 경우
- 5. 해당 교육진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경우
- 6. 기타 교육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- ② 제1항 제2~6호에 의하여 교육취소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.
- 제14조 (교육소요경비지원) ①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지급기준은 교육훈련지침에서 정한다.
 - ② 교육주관부서장은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강사, 교재, 예산 등을 지원한다.

제4장 교육훈련 사후관리

- **제15조 (교육결과 평가)** ① 직원의 교육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과정별 성격을 감안하여 생략할 수 있다.
 - ② 교육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훈련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6조 (교육포상) ① 공사가 주관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중 교육결과 평가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는 해당과정 교육인원의 상위 5% 범위 내에서 상벌규정 제9조에 의한 교육우등 상을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24>
 - ② 교육포상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상벌규정에 의하여 포상등급이 부여될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기타 교육포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③ 삭제 <2016.3.24>
- 제17조 (교육결과의 보고) ① 연수부서 또는 단위부서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교육의 결과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종료 익월 10일 이내에 교육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(단, 회사의 교육실적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분기별 현황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이 제출 된 것으로 본다) <개정 2017.10.26>
- ② 제6조에 의한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 중 별도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교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8조 (교육결과의 활용) ① 교육주관부서장과 단위부서장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결과를 관련부서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이수자는 학습내용의 현업활용을 통한 공사 생산성 제고 및 분야별 직무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관련 직무분야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19조 (재직의무) ① 제6조 규정의 연구과정 및 학위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기간의 1~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공사에 재직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. 다만,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3.6.14 >

- 1. 교육기간의 3배 <신설 2023.6.14 >
 - 가. 학위취득 위탁과정 및 1개월 이상 해외 위탁교육
 - 나. 연구과정(전일제 6개월 이상 및 비전일제 1년 이상)
- 1. 교육기간의 1배 <신설 2023.6.14 >
- 가. 학위취득 지원과정
- 나. 연구과정(전일제 3개월 이상 ~ 전일제 6개월 미만)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재직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
- 1. 사망. 정년도래로 당연면직 되었을 경우
- 2. 조직개편에 의한 인원감축 등으로 면직 되었을 경우
- 3. 질병, 사고 등으로 공사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
- 4. 기타 상기 각 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 되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- 제20조 (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회수) ① 교육주관부서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피교육자의 의무불이행으로 교육취소 및 교육 미수료시에는 해당 교육에 소요된 경비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과정별 교육계획 수립 시 별도의 회수율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재직기간 중에 인사규정 제31조, 제34조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사유의 발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동 위탁교육에 지급된 교육경비 중 재직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교육경비를 회수하며,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.
 - 회수금액 = 총 교육경비 × (재직의무불이행기간/재직의무기간)
- 제21조 (현지사직에 대한 처리) ① 해외위탁 교육자가 교육 중 현지에서 사직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.
 - 1. 징계해임
 - 2. 교육소요경비 일체 및 그로 인해 공사에 발생되는 제비용의 변상조치
 - 3. 관계기관에 여권갱신과 유효기간 연장 불허 요청 및 본국 소환 요청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사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- 1. 해외위탁교육자가 현지에서 사직하는 경우
 - 2. 해위위탁교육자가 귀임일자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임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해외위탁교육자가 교육취소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
 - 4. 해외위탁교육자가 국외에서 고의로 교육장소를 이탈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

제5장 교육학점이수제도

- 제22조 (운영) ① 교육학점이수제는 공사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수과정, 선택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소정의 교육학점을 부여한다. <개정 2016.3.24>
 - ② 직원은 당해 직급 재직기간 중 취득하여야 하는 교육학점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, 교육주관부서장은 학점 취득현황을 연1회 점검·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

2022.5.12>

③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학점 취득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, 교육학점 부여기준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지침에서 정한다.<개정 2016.3.24> <개정 2017.10.26>

제23조 (교육과정의 공지 및 변경) 교육주관부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의 교육과정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공지하여야 하고, 교육과정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24>

제6장 보 칙

- 제24조 (자기계발의 지원) ① 교육주관부서장과 단위부서장은 직원의 어학과 직무 자격취득 등 개인의 역량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공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주관부서장은 직원의 자기계발 지원계획을 제8조 규정의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자기계발 과정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 (기록의 관리) 교육주관부서장은 직원의 개인별 교육결과를 기록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9일 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제정과 동시에 교육훈련절차서(RM-P0801)는 폐지되며,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교육훈련절차서(RM-P0801)에 의하여 실시된 모든 교육훈련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된 모든 교육훈련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된 모든 교육훈련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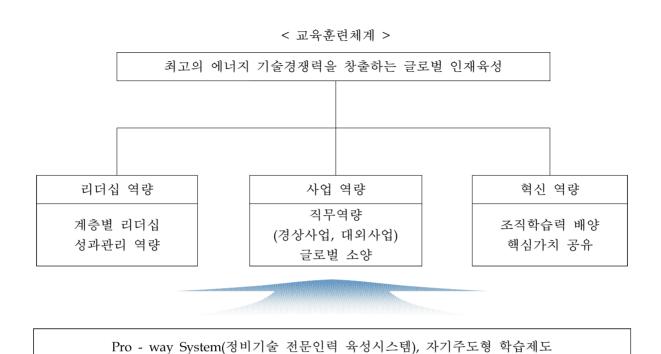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된 모든 교육훈련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된 모든 교육훈련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 교육훈련체계 <개정 2016.3.24>



[별표 2]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학점 취득기준 <개정 2016.3.24.> <개정2017.10.26><개정2022. 5.12>

구 분	1 ~ 3급	4 ~ 7급	별정직	특정직 (지원직)	전문직
연간 기준학점	2학점	3학점	1학점	1학점	1학점